

자체 사업 가용 재원	자 체 사 업 재 원	자체사업재원계(Ⅲ)	6,697	11,791	7,909	9,793	10,644
		소규모사업(시군구 10억미만사업 시도 20억원미만사업)	762	901	450	500	600
		계속사업(기투자사업)	5,058	9,604	6,466	8,333	9,031
		투자심사제외사업	537	689	559	560	563
		시군구지원사업	340	597	434	400	450
		신규투자가용재원(Ⅰ-Ⅱ-Ⅲ)	0	0	612	1,669	2,020

앞의 표에서 보듯이 현재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규투자가용재원 = 세입합계 - 세출합계 - 자체사업재원계

앞의 수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수치는 전체 세입의 합계에서 세출중 경상경비·의존재원사업·채무상환·예비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수반되는 세출합계를 공제하고, 기타 계속사업·소규모 사업·투자심사제외사업 등 자체재원사업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결산이 확정된 연도이전의 경우 결산수치로 작성하되, 미래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수치를 원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19-2 현행 가용재원 산정 방법의 쟁점

○ 지방채의 세입(가용재원)에 포함 여부

-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는 가용재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지방채는 본질적으로 특정목적용을 위한 재원이므로 자율성 측면에서는 가용재원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의존재원사업비(혹은 의존재원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금)의 가용재원 포함여부

- 국고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입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의존재원사업비 중 지방비부담금은 투자가용재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존재원(교부세를 제외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